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6-573호

구제역 백신접종 명령

「가축전염병 예방법」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른 구제역 백신접종 명령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년 11월 6일
농림축산식품부장관

□ **접경지역의 가축(소·염소 등 반추류) 소유자 또는 관리자(이하 "소유자등"이라 한다)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해당 가축 전 두수에 구제역 백신접종 실시**

○ 목적 : 제1종 가축전염병(구제역)의 예방

○ 지역 : 접경지역

* 인천(강화·옹진), 경기(고양·파주·김포·연천), 강원(철원·화천·양구·인제·고성)

○ 대상 가축명 : 반추류 동물(소·염소 등)

○ 가축전염병의 종류 : 구제역

○ 실시기간 : 2026년 11월 23일부터 2026년 12월 24일까지

○ 그 밖에 필요한 사항

- 접종 지원 대상 가축의 소유자등은 원활한 백신접종을 위하여 소 보정 등에 적극 협조할 것
- 접종 기간 중에는 백신접종을 모두 완료한 가축에 한하여 거래하되, 부득이한 경우 매도인은 미접종 사실을 통지하고 매수인은 이를 확인하여 접종을 완료할 것

□ **유의사항 :** 이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「가축전염병 예방법」 제60조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, 구제역 발생 시 같은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살처분 보상금을 감액할 수 있음

이 공고는 2026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.